

1998 NFPA 가을모임 요약

1998 가을모임 상정 NFPA 기준

- 11A 중·고팽창포 소화설비
- 16 일제살수식 폼워터 스프링클러 및 폼워터 스프레이설비 설치 기준
- 16A 폐쇄형 헤드 폼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49 위험화학물질 데이터†
- 50A 사용 장소에서의 수소가스설비
- 50B 사용 장소에서의 액화수소설비
- 51B 용접 및 절단공정 화재예방
- 53 산소농축분위기 화재위험
- 75 컴퓨터/정보처리장치 보호
- 80 방화문 및 방화창문
- 82 소각로, 쓰레기 및 린넨 취급설비와 장치
- 91 물질 기송용 배기설비 기준
- 99 의료시설
- 99B 저압시설
- 101B 건물 및 구조물 피난장치
- 105 제연문 조립품
- 110 비상 및 예비전력설비
- 111 비상 및 예비전력설비용 비축 전기에너지
- 120 석탄 전처리 플랜트
- 123 지하 역청탄광 화재예방 및 제어기준
- 262 전선 및 케이블의 화재 및 연기특성
- 264A 산소 소비열량계를 이용한 장식가구 또는 구성품과 매트리스의 방열율
- 325 인화성 액체, 기체 및 휘발성 고체 화재위험특성†
- 501C 레크리에이션차량
- 501D 레크리에이션차량 주차장 및 야영지
- 520 지하공간 방호기준
- 701 방염섬유 및 필름의 화재시험 표준방법
- 1470 구조물 붕괴 사고시 수색 및 구조†
- 1670 구조기술의 훈련과 구조방법
- 1975 소방대용 작업복 기준
- 8502 다중 베니 보일러의 로 폭발/내파 방지기준

† 총회 상정 철회

오는 11월 애틀란타시에서 개최되는 1998년도 NFPA 가을총회에서는 총 32개의 기준을 심의하게 된다. 다음은 금년 가을총회에 상정된 기준들 가운데 중요 기준을 발췌, 소개한 내용이다.

NFPA 11A, 중·고팽창포설비

본 기준은 중·고팽창포설비의 설치, 설계, 운용, 시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고팽창포는 계면활성제 수용액이 묻어 있는 망이나 스크린 등의 통기성 매체를 통해 공기 등의 기체를 통과시킬 때 기계적으로 형성되는 기포들의 결합체이다. 중팽창포의 팽창비는 20:1에서 200:1까지이며, 고팽창포의 팽창비는 200:1에서 약 1,000:1까지 이른다.

NFPA 51B, 용접 및 절단작업, 기타 화기 작업시의 화재예방

본 기준은 용접 및 절단작업뿐만 아니라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작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준의 제목 또한 “화기작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다수의 화재가 화기작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NFPA 자료분석보고서에 따른 결과이다.

본 기준은 또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기작업과 관련된 작업자 가운데 누구라도 진행중인 작업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신 경영철학도 도입하고 있다.

NFPA 80, 방화문 및 방화창문

1998년 판 본 기준에는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가해졌다. 그 첫째는 사용자의 ‘찾기’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 각 장마다 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배치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보다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NFPA 105, “제연문 조립품” 기준의 권장사항을 본 기준으로 가져와 “북도 어셈블리 중 제연문”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면서 기준의 강제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NFPA 91, 증기, 가스, 미스트 및 불연성 고체입자 기송용 배기설비

NFPA 91은 새롭게 확장된 적용 범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의 명칭까지 변경하는 전면적인 수정 작업이 가해졌다. 신판 NFPA 91은 물질 기송용 배기설비의 설계, 건축, 설치, 운영, 시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신판에서는 NFPA 650, “가연성 물질 처리용 공기 이송 설비”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미립자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다. 덕트의 이격거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역시 NFPA 650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발화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5장 또한 다른 NFPA 기준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NFPA 101B, 건물 및 구조물 피난장치

NFPA 101B 수정판은 건물 및 구조물내 피난장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건물코드들이 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단지 본 기준을 참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NFPA 101B 수정안에서는 용도의 분류 및 이격, 개구부 방호, 방화설비 및 장치 관련 기준, 내부 마감재, 건물내 구획, 특수위험 방호장치 등 NFPA 101 “인명안전코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외하였다.